

경·공매 지원서비스(특별법)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공매 지원서비스(특별법)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1.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는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 보수의 70%**를 지원하며, **집행권원 확보 비용, 입찰보증금, 법무사 보수 외 경매 집행비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 보수 공사 지원대상 (아래 법무사 보수표 기재대상만 지원)**

- 경매개시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관련 법무사 보수, 입찰신청대리, 우선매수권청구대리 관련 법무사 보수

※ 단,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각되는 경우에만 공사에 70% 지급 요청**

3. 신청 후 자진 취하한 경매에 대하여 **법무사 보수를 지원 받는 경우, 추가 경매 신청에 대한 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4. **기 지출한 경·공매 관련 법무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공사가 법무사 협회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 (30%할인 적용금액) -

(단위: 만원)

업무			보수액 (VAT 포함)	임차인 부담 (30%)	HUG 부담 (70%)	
경매 진입 단계	경매신청	소가 1억 이하	30.8	(9.2)	(21.6)	
		소가 1억 초과	37	(11)	(26)	
	※ 경매신청비용은 낙찰 시 환급되는 비용으로 본인전액부담 (기각되어 환급 불가 시 공사가 70%부담)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13.9	4.2	9.7	
배당 (배당적정성 검토+배당금 수령)			7.7	2.3	5.4	
환가단계 (택1)	낙찰 (상담포함)	①우선매수권서면행사 (사전신고 후 불출석)	38.5	11.5	27	
		②우선매수권 출석행사 (입찰기일출석)	1억 이하	46.2	13.9	32.3
			1억 초과	61.6	18.5	43.1
부속업무	열람·복사 (1회 한정)		3.1	0.9	2.2	
	채권계산서제출 (1회 한정)		2.3	0.7	1.6	
	주소보정 (3회 한정)		2.3	0.7	1.6	

5. 신청인은 업무협약 법무사 중 1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관할법원과 거리가 먼 법무사 선택 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는 위의 법무사보수표 상 비용만 지원가능)

6. 경·공매 지원 서비스 외 특별법의 다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여부를 체크(V)해주세요.

- 1.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확인합니다.
- 2.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법무사 매칭, 비용지원 서비스이며, 이후 경매신청, 권리신고 등 절차는 추후 매칭법무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 3. 신청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이메일 및 핸드폰·문자·전화로 보완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확 인